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 및 발의자 : 2019. 2. 14.(목),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(발의의원 16명)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8.(월), (의안번호 제91호)
- 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영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2018. 12. 5. 개최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8대 의원의 4개연도(2019 ~ 2022년)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2019년도 및 2020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각각 신설(안 별표3)
 - 2019년도 월정수당 :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2.6%) 적용 인상
 - 2020년도 월정수당 :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1.8%) 적용 인상
 - 2021년도 월정수당 :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
 - 2022년도 월정수당 :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% 적용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안은 제8대 의원의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은 지난 2018. 12. 5. 개최된 제3차 의정비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.6%를 적용하여 월 2,658,530원으로 하고,
- 2020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.8%를 적용하여 월 2,706,380원으로 하는 것이며,
- 2021년도 및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각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%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,
- 동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해당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